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건의

1. 건의 배경

본회에서는 환경처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고시 개정(안)의 “다량제조”라는 근거로 예치금 대상품목과, 나아가 임의로 정한 특정품목에까지 제조자에게 회수 처리의 책임을 부여하여, 제조자에게 회수체계 구축 및 집하·보관장소를 설치 운영도록 하는 것은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위반시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하려는 방침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초래가 우려되고 많은 문제점과 함께 현실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건의를 하게 되었다.

2. 건의 내용

1. (제1조관련) “다량으로 제조” “환경오염 물질을 함유”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

○ 동 고시에서 정한 대상품목중, 일부 품목(냉장고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동고시에서는 “다량으로 제조”나 “환경오염물질을 함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폐기물 회수·처리의 원천적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함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가전제품 등 일반폐기물의 회수·처리 의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최종 배출자에게 수수료 징수 규정까지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별도 정수중

3. (제2조의1 “나” 항 관련) 대상품목의 재고

주) 본고는 지난 5월 13일 본회가 환경처에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3차 건의에 대한 내용임을 밝힌다.

○ 동 고시 대상품목중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등은 제품의 구성이 간단하고 대부분 철제로 구성(90% 이상)되어 유해물질 발생소지가 적으며,

○ 재활용시 경제성이 높아 민간재생처리업자에 의해 재생자원’ 등으로 재자원화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고시로서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제8조관련) 집하·보관장소 설치 운영의 어려움

○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도 확보가 곤란한 집하장소 처리장 등을, 회수 처리의무자라 규정하여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실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5. (제9조관련) 판매자의 적정분리 수집·보관 곤란

○ 현재 판매자의 사업장은 판매제품의 적치에도 그 면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분리 수집 용기 및 장소 확보에 대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됨

6. 정부에서는 이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자의 폐기제품 회수·처리 유도 방침으로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적용중인 바, 동고시는 이의 중복, 확대 규제이며 전자산업의 저해요소라 판단됨

7. 가전업계는 자원 재활용의 근본대책으로, 제품 설계·생산단계부터 감량화, 재활용 용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활용 평가제도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환경적 합성 제품의 연구·개발에 진력중이므로, 폐기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간재생처리업체 육성·지원을 요망함